

전산운영위원회규정

제정: 2023.10.01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교내 전산 관련 업무의 주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위원회는 전산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라 한다.

제3조(위원회 구성) 위원회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.

1. 위원장 : 미래전략처장이 위원장이 되며 정보화책임관이 된다.
2. 위원 : 위원은 교무처장, 사무처장, 입학학생취업처장을 당연직으로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제청하고 총장이 위촉한다.
3.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

제4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②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6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교내 행정업무 전산화 계획(입시 업무 전산화 등)
2. 교내 전산장비의 확보 및 운영계획
3. 단계별 전산화 추진 계획 수립
4. 전산기 사용 인력 확보 계획
5. 기타 전산업무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감독사항

제7조(회의록)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결사항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